

제 안 요 청 서

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획연구

2020. 8.

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

목 차

I. 과제개요	1
II. 제안요청사항	2
III. 과업수행	3
IV. 입찰과 평가	5
V. 기타 사항	8
[붙임] 제안서 양식	11

1

과제개요

□ 과제명 :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획연구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(고시)는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·인력·연구·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 주기*로 개정

* 18년 제정 → '21년 개정 예정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(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·인력·연구·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시켜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2 (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국제동향,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·보완하여야 한다.

- '21년 개정 예정으로 개정(안)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필요

- 現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상 문제점 분석 결과와 사용자의 니즈 및 최신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트렌드 등을 반영한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(안) 도출 필요

□ 일반 사항

- 수행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
- 예산규모 : 금 오천만원정 (₩50,000,000/VAT포함)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(총액) 협상에 의한 계약

2

제안요청사항

과제명	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획연구	유형	정책기획
목적	○ '21년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정(안) 마련		
기간 및 예산	○ 수행기간 : 계약일로부터 6개월 ○ 수행예산 : 50,000,000원		
주요산출물	○ '21년도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정(안) ○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방안 및 활용 확대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제언		
연구 내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 수요 조사·발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참여부처 등 이해관계자*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개정 수요조사·발굴 * 복지부, 과기부, 행안부, 산업부, 농림부, 식약처, 농진청, 환경부, 중기부 및 부처별 R&D 전문기관 대상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·외 보건의료기술 현황 분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·외 보건의료기술 동향 및 분류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○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현황* 조사·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* 범부처적 R&D관련 정보 분석 및 보건의료기술개발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등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개정(안) 마련 및 의견수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·외 보건의료기술 분야 트렌드 및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개정(안) 마련 ○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참여부처 등 이해관계자 및 연구자 대상으로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후 개정(안)에 반영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방안 마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와의 연계방안 도출 ○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 확대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제언 제시 		
특기사항	1. 선정 후 착수보고회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·조정 가능 2. 정책지원 및 근거자료 생성을 위한 대응에 적극 지원하여야 함		
연구개발 단계	기타	실용화 여부	해당 없음

□ 과업 추진방법

○ 과업수행

-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되,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과업 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수행내용 등에 대한 조정을 수행
- 과업 수행내용의 전문성, 신뢰성, 시급성 및 광범위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진을 구성하여 수행
- 구성된 연구진은 연구 참여자들의 원활한 협동연구를 위해 수시로 작업내용과 진행상황을 점검
- 수급인은 과업 수행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, 학계, 전문기업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
- 수급인은 과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성, 기술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

○ 과업 착수

-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에 착수계, 수행계획표,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,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

○ 과업 변경

- 본 과업수행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
- 위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

-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,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음

○ 과업 진도관리

-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은 원칙적으로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 보고를 하여야 하며, 발주처의 요구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따라 수시보고를 통해 보고해야 함

○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

-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짐
-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
 - 1) 계약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) 수급인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
 - 3) 과업 계획 및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했을 때

□ 사업수행 결과물

○ 결과물(사업기획보고서, 결과보고서) 제출

- 결과보고서(요약보고서 포함) : USB 1식(HWP, PDF 파일)
- 결과 발표 자료 : PPT 파일 포함

※ 인쇄본 제출 부수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용역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관련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

○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서 심의

- 중간보고 : 중간보고는 월 1회 실시하고, 업무협의를 수시 실시
- 최종보고 : 종합결과 발표 및 심의 실시

○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

4

입찰 및 평가

□ 입찰 참가자격

-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(업종코드: 1169)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
- 기타 자격은 입찰공고서에 따름

□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안내

- 제안서 접수 및 제출방법 : 입찰공고문 참조
- 제출서류
 -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(발표자료) USB 1식
 -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서에 따름

□ 선정 및 평가방법

- 입찰 및 낙찰방식
 - 입찰방식 : 제한경쟁(총액) 협상에 의한 계약
 - 공동이행(공동계약) 불가
 - 낙찰방식 :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
 - ※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」
- 평가방법 및 기준
 -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개정 역량이 충분한 기관 (또는 연구자)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
 - 평가방법은 서면 또는 발표평가
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(외부4명, 내부2명)를 구성해 제안기관의 기술능력(80점)을 평가하고 위원 명단은 미공개

※ 종합평가점수 산출 : 종합 평가점수 = 기술 평가점수 + 입찰가격 평가점수

-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/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고,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배점한도의 85%(68점)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,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※ 동점 시 처리방침

-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-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

-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

○ 입찰의 무효

-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될 때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입찰무효 및 부당업자로 제재

□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기준	평가항목/평가내용	배점	비고
I. 기술능력 평가		80	
사업의 이해도		20	
1. 일반사항	·사업수행 대상 및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	10	
	·제안내용 구성의 타당성	10	
수행계획 전반, 수행방식 및 기법 등		20	
2.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	·수행계획의 타당성	5	
	·기획 및 아이디어의 독창성, 창의성	5	
	·수행계획의 체계성	5	
	·사업수행 방식 및 기법의 합리성	5	
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, 전문성 등		15	
3. 수행체계의 적절성	·전담조직 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	5	
	·참여인력의 전문성	5	
	·추진일정의 현실성 및 타당성	5	
관련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, 신뢰도 등		25	
4. 기관의 수행능력	·관련 전문인력의 보유 및 사업수행의 전문성	10	
	·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(기술평가)	5	
5. 사회적 가치 기여도	·지역사회 공헌도	5	
	·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성	5	
총 점		80	

※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, 제안서 평가 시 추가 세부평가 항목 사용 가능

□ 제안서 작성요령

- 제안서는 한글,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A4용지 단면 출력을 원칙으로 하며, 분량은 제한을 두지 않으나 심사항목과 관계없는 자료 포함은 지양함
- 제안서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(페이지번호) 표시,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는 별첨 표시
-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고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가장 유사한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-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**별첨으로 제출**하여야 하며,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-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, “...를 제공할 수도 있다”, “...이 가능하다”, “...을 고려할 수 있다”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
-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제안서 내의 추진사항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
- 참가업체는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획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정보를 대외에 누설하거나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업체가 관련 책임을 짐

□ 계약 조건

○ 금전의 지급

- 선급금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
- 잔금은 동 사업 완료 보고서 검토 후 지급함

○ 본 사업은 용역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 금액의 1,000분의 1.25로 함(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)

○ 당해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·간접적인 소유,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(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, 56조)

○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, 특수조건,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

○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귀속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준함
- 낙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불이행시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됨

□ 제안서 효력

○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※ 단,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

○ 계약 상대방으로 선정된 경우 제안서는 계약 이행조건으로 하며,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□ 소유권

-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또는 국가에 손해가 발생할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. 용역사업에 따른 산출물의 직·간접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2, 제56조에 따른 다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름

□ 보안유지

- 본 용역을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나 자료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외유출을 금지함
-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수행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
- 입찰 참여기관 및 선정된 용역기관은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

※ 관련 문의처(한국보건산업진흥원)

- 제안서 제출 및 평가: 장 미 ☎ 043-713-8254 (R&D성과관리팀)

인력 현황 ('20년 8월 기준)

구분	성명	연령	직위

* 구분 란에는 책임자, 연구원,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

작성목차	작성방법	비고
I. 요약서		
II. 제안개요		
1. 제안목적 및 필요성	-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추진전략, 특·장점, 기대효과를 요약	
2. 제안범위		
3. 추진방향 및 전략		
4. 제안의 특·장점		
5. 기대효과		
III. 제안업체 일반현황		
1. 일반현황	-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	* 증빙서류 첨부
2. 조직·인원	-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 현황 등	
3. 재무구조	-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등	
IV. 과업수행 부문		
1. 사업개요 - 사업 제안의 배경, 목적, 범위,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		-
2. 사업목표 및 내용 -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프로세스별 정리하여 기술 • 사업목표 • 사업내용		
3. 사업추진 체계 및 전략 -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의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		
4.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- 사업 추진내용별 일정을 공정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표기		
5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•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활용 확대를 위한 법·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제언 제시		
V. 과업관리 부문		
1.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-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	
2.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	- 수행인력 및 세부 이력사항	
3. 수행일정 추진계획	-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방법 등	
4. 보고 및 의사소통	- 보고(수시, 월간, 중간, 최종) 및 검토계획 등	
5. 보안 및 비상대책	- 과업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대책 관리방법 등	
VI. 기타 부문		
본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 등		